## 예 산 총 칙

201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계	471,438,472	14, 143, 154
일반회계		424,001,933	12,720,058
특별회계		47,436,539	1,423,096
	공기업특별회계	45,451,917	1,363,558
	상수도사업특별회계	21,730,758	651,923
Ш	하수도사업특별회계	23,721,159	711,635
	기타특별회계	1,984,622	59,539
$\prod$	지하수특별회계	235,880	7,076
	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337,424	40,123
	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	120,280	3,608
	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	291,038	8,731

- 제 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-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344,420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  - 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